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 포함 사항(제2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등으로 정함.

나.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제6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기부금품을 투명하게 접수·관리하기 위하여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기부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자가 정한 용도로만 기부금품을 사용하도록 함.

다. 수입·지출 결산 등의 보고(제10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관장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수입·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실적 보고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공인회계사 등의 회계감사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운영평가의 방법 등(제12조)

환경부장관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경영상태, 담수(淡水) 분야 생물자원의 조사·연구 활동 및 대국민 서비스 등에 대한 운영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3년마다 하도록 하고, 운영평가일 3개월 전까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대상 및 일정 등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5년 4월 20일

국무총리 이 완 구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 기 권

●대통령령 제2620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①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수급자격자가 제65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수급자격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일 것
- 2. 제1호의 사유로 실업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나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1조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8조의3(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150만원을 말한다.

제75조제1항 전단 중 “계좌”를 “계좌(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급여로 지급된 예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실업급여를 압류가 제한되는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041호, 2015. 1. 20. 공포, 4. 21. 시행)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4월 20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여성가족부장 김희정

●대통령령 제26209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